

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

[재정 1989. 12. 21 조례 제147호]
개정 1990. 7. 18 조례 제162호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제 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심의사항)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.

1.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
2.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
3.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3 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1~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되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구 소속공무원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의 지방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, 한국감정원직원, 감정평가사, 부동산중개업자, 금융직원등 지역내의 지가에 정통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제 4 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.

② 간사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담당계장이 되고, 서기는 공시지가 담당자가 된다. (개정 1990. 7. 18 조례 제162호)

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제 5 조(회의소집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 불가 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.

제 6 조(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